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 공시송달 공고

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1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- 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목○자	67.02.25.	충남 아산시 ○○읍 ○치로 ○6○, 1○○동 ○○7호	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	▪ 처분제목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▪ 처분원인: (주)동영조경에서 2026. 4. 29~ 2026. 4. 30과 2026. 5. 6에 총 3일간 근로 사실 미신고 ▪ 반환명령액: 1,348,030원	1.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 2. 본인 연락 두절

- 4. 공고기간: 2026. 9. 10. ~ 2026. 9. 24.(15일간)
- 5.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(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6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69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(Tel. 041-620-74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